

●전남지방우정청공고 제2026-130호

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 및 동법 제73조(연체료 등의 징수)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, 독촉고지 및 체납(압류예고) 고지 등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07월 03일

전남지방우정청장

국유재산 체납자 납부 최고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

1. 제 목: 국유재산 체납자 납부 최고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

2. 근거법규

- 가. 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 및 동법 제73조(연체료 등의 징수)
- 나. 국세징수법 제10조(독촉) 및 제3장 강제징수
- 다. 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송달)
- 라.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(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)

3.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15일간(2026.7.3.~ 7.17.)
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

(단위: 원)

체 납 자		체 납 내 역		
성 명	주 소	징수결의번호	부과금액	징수과목명
신용*	전남 여수시 화양면 자매로 **	191031684 등 15건	19,810,400	국유재산사용료
	전남 여수시 소호로 ***			

5.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☎(062)600-475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